

서울특별시 마포구 인터넷방송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07. 5. 22

행정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7년 5월 11일 마포구청장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07년 5월 14일

다. 상정일자 : 제128회 임시회 제1차위원회 (2007. 5. 22)
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홍보과장 조 한 영

가. 제안이유

구정정보 및 구민생활에 유익한 각종정보를 인터넷망을 이용하여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터넷방송국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의 기초를 마련하고, 프로그램 참여자의 보상기준을 마련키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 개정 골자

가. 방송국의 업무(안 제4조)

○ 주요 방송내용

- 구정뉴스, 확대간부회의, 정책회의 등 구정소식
- 생활·교양·문화·건강·오락
- 기타 주민 생활편익 증진에 필요한 프로그램

나. 방송국 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(안 제5조 내지 제7조)

○ 기능 : 방송 콘텐츠 구성 및 효율적인 운영

○ 구성 : 7인 이내

- 위원장(당연직 - 행정관리국장)
- 방송관련 교수 및 방송전문가
- 관계공무원
-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
○ 임 기 : 2년(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)

○ 간 사 : 인터넷미디어팀장

○ 회 의

- 위원장이 소집하고 사무를 총괄
-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 사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함
-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찬성으로 의결함.

○ 위원회 수당 :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예산 범위 내 수당지급

다. 콘텐츠 대여(안 제8조)

○ 자체 제작 콘텐츠에 대하여 공공목적으로 활용 시 무상 대여

라. 객원기자 등 위촉·운영(안 제9조)

○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등을 위한 객원기자 및 모니터 요원 위촉

○ 객원기자 및 모니터요원은 마포구에 주소를 둔 자

마. 프로그램 제작수당(안 제10조)

○ 프로그램 제작 참여자에 대해 예산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원고료 지급

○ 방송 콘텐츠 구성 및 효율적인 운영

바. 광고의 게재 (안 제11조)

○ 공익에 부합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광고는 무료 게재

사. 운영의 위탁(안 제12조)

- 방송의 효율적·전문적 운영을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
- 방송의 안정성을 위하여 위탁기간을 1년 이상으로 규정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(전문위원 박 관 수)

○ 동 조례안은 인터넷망을 이용하여 주민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생활편익을 증진하고자 마포구청 내에 인터넷방송시설을 설치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임.

<주요 제정내용>

○ 안 제4조에는 구정뉴스, 의회소식 등 인터넷방송국의 방송내용을 규정하였고, 안 제5조 내지 안 제7조에는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방송을 위하여 행정관리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방송국운영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, 안 제8조에서는 공공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제작된 모든 콘텐츠를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도록 하고, 안 제9조 내지 안 제10조에서는 콘텐츠 제작을 위한 객원기자 및 모니터요원을 구민 중에서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, 또한 인터넷방송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한 객원기자 및 모니터요원 등에 대해서는 제작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.

○ 안 제11조에 규정된 광고의 게재는 공익에 부합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광고에 한하여 무료로 게재할 수 있도록 하였고, 안 제12조 내지 안 제13조에서는 인터넷방송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규정과 수탁기관 선정시 필요한 각종 사항을 규정하였음.

<검토의견>

○ 동 조례안은 인터넷망을 이용하여 주민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주민생활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는 사료되나 안 제8조에 규정된 공공목적으로 활용할 경우의 콘텐츠 대여 기준과 안 제11조에 규정된 공익에 부합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광고의 게재 기준 등에 대해서는 추후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으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규칙 등에 규정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고, 본 인터넷방송과 관련한 비용은 이미 2007년도 예산에 인터넷방송 운영에 필요한 용역비로 2억5천만원과 인터넷방송 센터 구축비로 4억원이 반영되어 있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회의록 참조

5. 토론요지 : 없 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8. 기타사항 : 없 음

서울특별시 마포구 인터넷방송국 설치 및 운영 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년월일 : 2007. 5. 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제정이유

구정정보 및 구민생활에 유익한 각종정보를 인터넷망을 이용하여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터넷방송국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의 기초를 마련하고, 프로그램 참여자의 보상기준을 마련키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방송국의 업무(안 제4조)

- 주요 방송내용
 - 구정뉴스, 확대간부회의, 정책회의 등 구정소식
 - 생활·교양·문화·건강·오락
 - 기타 주민 생활편익 증진에 필요한 프로그램

나. 방송국 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(안 제5조 내지 제7조)

- 기능 : 방송 콘텐츠 구성 및 효율적인 운영
- 구성 : 7인 이내
 - 위원장(당연직 - 행정관리국장)
 - 방송관련 교수 및 방송전문가
 - 구 소속 공무원
 -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- 임 기 : 2년(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)

- 간 사 : 인터넷미디어팀장
- 회 의
 - 위원장이 소집하고 사무를 총괄
 -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 사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함
 -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찬성으로 의결함.
- 위원회 수당 :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예산 범위 내 수당지급

다. 콘텐츠 대여(안 제8조)

- 자체 제작 콘텐츠에 대하여 공공목적으로 활용 시 무상 대여

라. 객원기자 등 위촉·운영(안 제9조)

-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등을 위한 객원기자 및 모니터요원 위촉
- 객원기자 및 모니터요원은 마포구에 주소를 둔 자

마. 프로그램 제작수당(안 제10조)

- 프로그램 제작 참여자에 대해 예산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원고료 지급
- 방송 콘텐츠 구성 및 효율적인 운영

바. 광고의 게재 (안 제11조)

- 공익에 부합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광고는 무료 게재

사. 운영의 위탁(안 제12조)

- 방송의 효율적·전문적 운영을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
- 방송의 안정성을 위하여 위탁기간을 1년 이상으로 규정

3. 조례안 : 따로붙임

4. 예산조치 : 추경에 반영 - 위원회 운영 수당 및 프로그램 참여수당

5. 기타사항

- 가. 입법예고(2007. 4. 19 ~ 2007. 5. 9)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- 나. 서울특별시 마포구조례·규칙심의회 심의·의결(2007. 5. 10)
- 다. 서울특별시 마포구 인터넷방송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부. 끝.

서울특별시 마포구 인터넷방송국 설치 및 운영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주민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주민생활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에 인터넷방송국(이하“방송국”이라 한다)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“인터넷방송국”이라 함은 인터넷망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컴퓨터 또는 TV 모니터 등을 이용하여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공간 및 시설을 말한다.

제3조(위치) 방송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청 내에 둔다.

제4조(방송국의 업무) 방송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방송한다.

1. 구정뉴스, 확대간부회의, 의회소식, 정책회의 등 구정소식
2. 생활·교양·문화·건강·오락
3. 기타 주민 생활편익 증진에 필요한 프로그램

제5조(방송국운영자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) ①방송국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방송국운영자문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.

1. 인터넷 방송 관련 경험과 식견을 갖춘 대학교수 또는 전문가
2. 구 소속 공무원
3.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
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

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. 다만, 공무원이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.

제6조(위원회의 운영)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.

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,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, 간사는 인터넷미디어팀장이 된다.

⑤간사는 회의록을 작성·비치하여야 하며,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·장소 및 심의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.

⑥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⑦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7조(위원회 수당)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또는 제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·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8조(콘텐츠 대여) 구청장은 방송국에서 제작한 모든 콘텐츠를 공공목적으로 활용할 경우에는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.

제9조(객원기자 등 위촉·운영) ①구청장은 방송국에서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등을 위하여 객원기자 및 모니터요원을 위촉할 수 있다.

②객원기자 및 모니터요원은 구민 중에서 위촉한다.

③객원기자 및 모니터요원의 위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10조(프로그램 제작 수당) 구청장은 인터넷방송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하는 객원기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원고료 및 회의 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11조(광고의 게재) 인터넷방송은 광고를 게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공익에 부합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광고는 무료로 게재할 수 있다.

제12조(운영의 위탁) ①구청장은 방송국의 효율적·전문적 운영을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.

②위탁기간은 1년으로 하되, 수탁자의 사업운영실적 등을 심사·평가하여 연장할 수 있다.

③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13조(수탁기관의 선정 등) ①구청장은 방송국의 위탁 운영대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, 방송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는 사업자선정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적격자를 선정한다.

②구청장은 방송국의 위탁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.

1.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, 장비, 시설 및 기술수준
2.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
3. 책임능력·공신력 및 재정적인 부담능력
4. 위탁사무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·전문성 및 사무처리실적 등

제14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